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효율적인 운영 및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내지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활동

제7조 회의

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이사의 보고 수령

(3)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 대표

(4)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송 제기 결정 여부

(5)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6)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7) 선정된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9)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0)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1)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감사계획 및 결과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승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6.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감사인의 선정 등

제 14 조 선정 등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선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전기에 선임된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전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전기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내역
   (3)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4)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제 6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⑧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6 조 감사인의 해임

①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② 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제 18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① 회사의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위원회에 대면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대리 보고 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 1 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 하였다는 사실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①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 및 책임이 있다.

②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그 이유, 근거, 개정사항 등을 전자문서화 하여 작성·관리한다.

제 6 장 보칙

제 20 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전담팀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담팀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1. 부칙(2005 년 3 월 18 일)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2011 년 12 월 1 일) 이 규정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 부칙(2019 년 5 월 14 일) 이 규정은 2019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4. 부직(2021 년 5 월 20 일) 이 규정은 2021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